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609
----------	------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5월 25일 이병도 의원의 10명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6월 1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자’의 정의에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2차 피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2차 피해 방지와 2차 피해 최소화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그 구성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전부개정안은 22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시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안 제3조)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6조~안 제10조), 여성폭력 예방교육(안 제13조), 디지털성범죄 예방(안 제14조), 2차 피해 방지(안 제15조), 여성정책 모니터링(안 제16조),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지원(안 제18조~안 제21조)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전부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제2조(정의)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3조(시장의 책무)	제18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9조(센터 기능)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0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21조(지도·점검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회의) 제9조(간사) 제10조(위원수당)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제13조(예방교육) 제14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제15조(2차 피해 방지)	제22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제2조(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	--

2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 (안 제1조~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안 제2조제5호)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2호1)에 직접 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명확히 하였음.
- 또한 2차 피해²⁾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서울시차원의 여성폭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력 대응 범위를 확대하였음.

□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

- 개정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7조³⁾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기본계획⁴⁾에 대응하

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

여 같은법 제8조5)에서 시장에게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 할 것임.

- 또한 개정안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가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피드백 될 수 있는 후속조치를 통해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p><u>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①</u> 시장은 <u>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와피해자보호시행계획</u> (이하 “<u>시행계획</u>”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u>②</u> <u>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연대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하여야 한다.</u></p> <p><u><신설></u></p>	<p><u>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u> ----- <u>「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u>----- ----- ----- -----.</p> <p><u><삭제></u></p> <p><u>③</u> <u>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p>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제10조)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6)에 따라 시장은

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여성폭력방지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현행 조례⁷⁾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역연대의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연대가 보호와 지원대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구성에 학교와 교육청, 경찰·검찰·법원 등 경찰·사법관련기관,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까지 아우르고 있는 바, 개정안을 통해 구성될 지방여성폭력방지원회가 현행 지역연대의 구성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임.
- 그 밖에 부칙(안 부칙제2조)으로 해당 지역연대의 경과규정을 두어, 위원회 설치·운영 상의 공백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였음.

□ 2차피해 방지 (안 제15조)

- 본 개정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⁸⁾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

7)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자의 2차피해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방지 지침과 관련자 교육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2차피해의 정의(「여성폭력방지법」제3조제3호)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의 설치·운영 (안 제18~제21조)

- 개정안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센터는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 “(가칭)서울 #WithU센터”로 집행부 직원, 젠더폭력 전문가, 서울시 국어 바르게쓰기 위원회 제안에 대해 지난 5월 심사를 통해 명칭을 변경한바 있음.
- 센터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민간의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임.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정의규정 및 시행계획, 위원회 사항 등을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2차 피해 지원과 2020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미 구성된 지역연대의 협력체계를 지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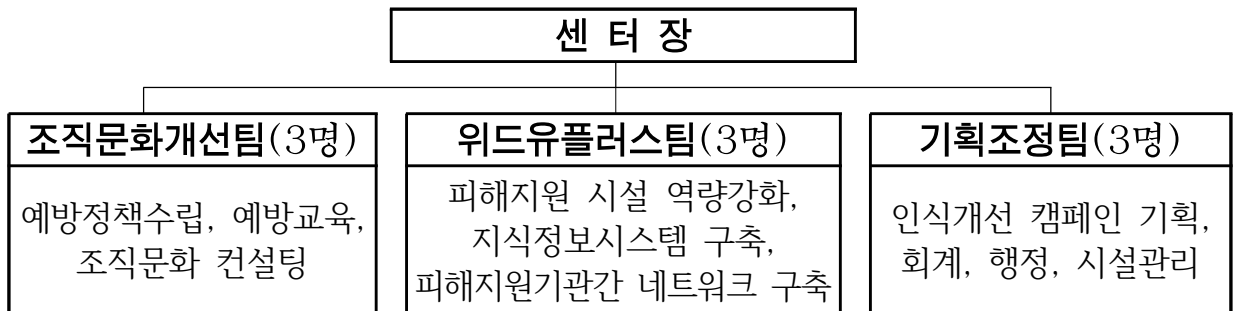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계획

운영방안 :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 6. ~ '23. 5. 예정)
- 추진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최근 3년이내 여성폭력, 노동, 성평등 관련 센터(상담소)를 관리·운영하였거나,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위탁사유 : 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 추진

조직 및 인원(안)

- 인력 구성 : 3팀 10명(센터장1, 팀장3, 팀원 6)
- 조직도



주요 기능

- 법적·현실적 사각지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 피해 지원 거버넌스 구축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확산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9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이병도, 김혜련,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의원(11명)

1. 제안이유

-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피해자가 증가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폭력의 유형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법으로는 신종 여성폭력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바, 여성폭력의 범주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이 제정됨.
- 이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자의 범위와 2차 피해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계의 구축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피해자’의 정의에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등 간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5호)
- 나. ‘2차 피해’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다.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제하고,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2차 피해 방지와 2차 피해 최소화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마.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여성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권익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폭력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 · 연령 · 학력 · 혼인상태 · 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발생요인 · 발생유형 ·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실태조사의 내용과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3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관계법령

④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실적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제14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시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정책 모니터링)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 한 차례 실시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처리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관련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보관하고, 경찰·소방서·의료기관·학교·주민센터·복지관·관련 사업장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민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위원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